



## 미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법무과

### I.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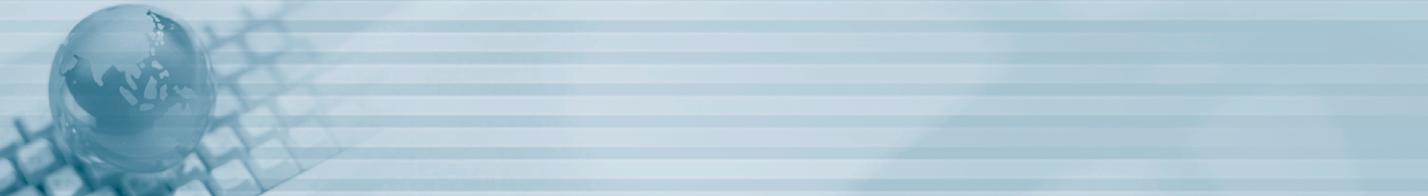
미국의 공증제도에 관한 법은 일찍이 1892년부터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와 전미공증인협회(NNA)가 두 축이 되어 통일법 및 모델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각 주는 연방법률차원의 통일법보다는 이들 통일법 및 모델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입법함으로써 주내의 공증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2002년에 미국은 전미공증인협회가 만든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에서 처음으로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8년도에는 플로리다와 뉴멕시코가 전자공증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전자공증제도는 특정한 정보의 존재의 증명이나 증거보전을 안전·확실·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자통신시대의 기술개발이 뒷받침되면서 미국에서 빠른 호응을 얻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공증제도는 공증인자격의 용이성, 사회적 활동 공증인 인구의 다수성, 공증인권한의 제한, 선서인증(JURAT)제도, 전자공증제도의 도

입, 통일모델법상의 정밀한 공증인 권리의무사항의 규율 등의 특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공증인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텍사스 주 공증인법, '1982년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Uniform Law On Notarial Act)'과 '2002년 모델공증인법'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전자공증제도의 법제도 현황과 텍사스 주 입법방식에 의한 전자공증제도 및 최근 2008년도 5월 31일부로 발효된 뉴 멕시코 주의 전자공증에 관한 행정입법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공증에 관하여 '외국의 공문서에 대한 인증(legalization)요구 폐지에 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for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 II. 미국법상의 공증제도에 대한 개요

공증인은 공공사무 공무원(public officer)이고, 주정부의 공정한 대리인(impartial agent)으



로서 주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sup>1)</sup> 그들은 어떤 권리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하여 해당 문서에 문서상의 사실을 증거하는 증명력을 부여한다. 또한 선서증언(oath) 등을 주관하고 서명의 진정성을 인증한다. 미국에서 공증인의 사무는 고대에 기원<sup>2)</sup>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사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공증행위는 국가의 법(Law of Nations), 특히 오랫동안 존중되어온 상인의 법(the law merchant)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sup>3)</sup> 따라서 상인의 법의 한계를 벗어난 공증인의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sup>4)</sup>

## 1. 공증인의 자격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sup>5)</sup> 따라서, 많은 일반인이 간단한 교육과정 또는 자격시험을 통해 공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주의 공무원(a public servant and an officer of the State)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자격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다른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 이어야 하고, 일정한 종류의 형사 중범죄(felony)<sup>6)</sup>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들은 공증사무 관련법에 관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후 공증사무 선서(oath) 및 등록을 해야 하며, 법률상 요구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금(bond)을 납입하여야 한다.<sup>7)</sup> 미국은 공증인 자격요건이 이처럼 엄격하지 않은 대신에 보증금납입 방식이나 보험제도를 채택하여 공증업무상 공증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공증인은 주정부(일반적으로 주지사나 주 국무부장관-secretary of state-, 또는 주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어 ‘공정한 증인(impartial witness)’으로서 일반국민을 봉사한다. 공증인은 임명된 관할권내(jurisdiction)<sup>8)</sup>에서 공증사무



1)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1.

2)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 1 (Updated May 2008) (In re Opinion of the Justices, 73 N.H. 621, 62 A. 969 (1906): 공증사무는 초기로마법에서 유래하여 노르만 콘퀴스트(Norman Conquest)이전에 영국에 알려졌다.

3)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 1 (Kumpe v. Gee, 187 S.W.2d 932 (Tex. Civ. App. Amarillo 1945))

4)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 1

5) 따라서 일반인들은 아주 쉽게 공증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बैं크 오브 어메리카(Bank of America)와 같은 일반은행의 지점이나 우체국의 업무를 돕는 우편물 취급소 등에서 조차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문서공증이나 여권사본 등의 사진공증까지 쉽게 받을 수 있다.

6) 미국에서 중범죄(felony)는 경범죄(misdemeanor)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컴먼로상 1년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가리킨다.

7) 공증인이 되는 자격은 국가마다 다르다.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나라도 있고, 일정한 실습과정을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주로 시민법 체계 국가의 공증인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더하여 변호사에게도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를 임명기간동안<sup>9)</sup> 실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어떤 주는 각 카운티(County)의 소액사건심판원(Justice of Peace)이 임명하기도 한다. 각 주 법률은 공증인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권한과 사무지역, 임명자격, 보증금<sup>10)</sup>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 공증인은 필요한 수대로 임명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주지사가 자신의 재량에 의거하여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지 않을 재량권(discretion not to appoint)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증인이 제공하는 많은 공증사무와 서비스를 고려할 때, 겉으로 보기에 주지사의 재량적 임명을 규정한 듯 보이는 법률은 사실상 거의 지속적인 의무를 주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11)</sup> 따라서 미국에서의 공증인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지금까지 많은 수의 공증인이 활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주의 경우 2008년 현재 12만명의 공증인이 활동하고 있다.<sup>12)</sup>

한편, 공증인이 미국시민(citizen)일 것을 요구하는 몇 개 주의 법은 미연방법원의 판결<sup>13)</sup>에 의해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 평등권 조항(Equal

Protection)을 위반하여 위헌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는 미 시민권자 뿐아니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Alien)에게까지 공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였다. 애리조나 주는 2007년 9월 18일부터 상원법안 1639호에 의하여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공증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4년마다 자격있는 사람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데, 6시간의 공증인 학습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은 온라인, 홈스터디 또는 승인된 공증교육인 앞에서 수강을 해야 한다. 공증인이 새로 되는 사람이나 재임명을 신청하는 공증인은 FBI와 주정부의 확대된 신분조사를 받게 된다.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일반법률 제 42-30-14조는 공증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제목하에 공증인의 자격을 일정공무원에게 상당히 넓게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본 주의 상원의원, 주 대표, 시나 타운의회의 위원, 주법원의 주, 부, 보조 행정사무공무원(clerk), 시의회 행정사무공무원(municipal clerk) 등도 재임 또는 근무기간 동안 공증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8) 일반적으로 주 공증인은 주전체에 걸친 관할권(statewide jurisdiction)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들의 공증활동은 임명신청서에 기재된 활동지역이나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다.

9)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3-2조상 공증인 임기는 4년이다.

10)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3-3조상 보증금은 2만5천 달러이다.

11) 58 Am. Jur. 2d Notaries Public § 5 (*Hollman v. Warren*, 32 Cal. 2d 351, 196 P.2d 562 (1948)).

12) <http://www.commonwealth.virginia.gov/OfficialDocuments/Notary/notary.cfm>.

13) *Bernal v. Fainter*, 467 U.S. 216 (1984).



다. 각 지역 경찰서의 두명의 경찰관은 서면으로 경찰서장의 확인하에 공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공증인임명 수수료는 면제된다.

미네소타 주의 공증인은 상원의 추천과 동의로 주지사가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갖는다. 18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주 국무부 장관에게 그 임명 및 재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와 인접한 주의 인접한 카운티 주민도 미네소타 주에서 공증인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플로리다 주는 공증인이 7500불의 보증금(bond)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공증인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금제도는 공증인의 고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테네시 주는 2007년 7월 1일부로 공증인의 보증금을 1만달러에서 2만5천달러로 늘렸다.<sup>14)</sup> 일리노이 주의 보증금은 5000불이다.

## 2. 공증인의 권한

### (1) 권한범위의 한정

법률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사법적 또는 최소한 준사법적 성격을 띤다. 비록 공증인이 행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사법적이기 보다는 행정사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법률은

소액사건심판법원의 권능을 공증인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인은 문서의 서명을 증명하고 그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공증인은 공증인이 증명하는 서명의 주체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공증인(Notary Public)은 인정(acknowledgment), 선서인증(jurat)상의 선서증언(oaths)이나 무선서증언(affirmation) 등의 공증행위를 함으로써, 문서의 서명이나 내용의 진정성(Authentication of documents)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증대상에 대한 증인(witness)의 역할을 수행한다.<sup>15)</sup>

구체적으로 2002년 모델공증인법은 제5-1조에서 8가지 공증인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다: 인정(acknowledgment), 선서증언(oath) 및 무선서증언(affirmation), 선서인증(jurat),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 복사인증(copy certification),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전자공증(electronic notarizations), 기타 주법에 의해 가능한 공증행위 등.

이처럼 미국에서의 공증인은 시민법체계 국가들의 공증인보다 제한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타국가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공증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대신에 한정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



14) (House Bill 1384) TCA, Section 8-15-104.

15) 예를 들어, 미국의 법원서기는 종종 공증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증인의 선서를 집행하고, 재판절차상의 기록이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임을 인증한다. 또한, 공증인으로서 증거개시절차상의 증언(deposition)을 접수한 경우, 이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아닌 공증인은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고,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sup>16)</sup> 또한 문서에 어떻게 서명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공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공증인의 권한사항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sup>17)</sup>

### 1) 인정(Acknowledgement)

인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공증행위로 서주된 목적은 서명자의 신분확인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즉 문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서명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인정은 서명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자신의 서명행위가 자유로운 법률행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즉,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없이 문서가 서명되었고 오직 문서에 기술된 목적만을 위해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공표하

는 것이다. 인정증서(A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는 공증인에 의해 서명된 서면진술로서 인정(Acknowledgement)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공증인은 인정을 실시할 때, 반드시 문서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증서나 기타 귀중품의 소유권에 관한 문서는 이러한 문서가 공공기록부에 등록되기 전에 그들의 서명이 인정(acknowledge)을 받아야 한다.

### 2) 선서인증(Jurat)

선서인증(Jurat)<sup>20)</sup>은 문서서명자의 진실된 양심에 호소하고 만약 서명자가 거짓말로 선서한 것으로 발견되면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sup>21)</sup> 선서인증을 실시할 때 공증인은 반드시 신청자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후 서명자로 하여금 절대적 존재에게 진실성을 약속하는 선서증언



16)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5-9조.

17) 이하의 4개항목은 일반공증의 항목이면서 전자공증의 4가지 대상이다.

18)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2-1조, 9-1조.

19) Nevin Barich, *Nuts & Bolts: Certificates*, NNA (Jan. 15, 2006). Available at <http://www.nationalnotary.org/news/index.cfm?Text=newsNotary&newsID=847>.

20) 선서인증(jurat), 선서증언(oath), 무선서증언(affirmation)의 문서형식상의 표현차이는 이하와 같다.

선서인증(Jurat): “특정년일에 공증인 누구에서 선서됨(Sworn to before me this ..... day of ....., 20 .....)”

선서증언(Oath): “당신이 기술한 본 진술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됨을 엄숙히 선서합니까?(Do you solemnly swear that the contents of this affidavit subscribed by you is correct and true?)”

무선서증언(확인:Affirmation ) (선서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선택) : “당신이 한 진술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엄숙히, 진정으로, 참되게 선포하고 확인합니까?(Do you solemnly, sincerely, and truly declare and affirm that the statements made by you are true and correct?)”



(oath)을 하게 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진실성을 약속하는 무선서증언(확인 : affirmation)을 하게 하여야 한다.<sup>21)</sup> 서명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선서증언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개시절차상의 증언(deposition)이나 선서진술서(affidavit)와 같은 역할을 한다.

### 3)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이라 함은 개인이 특정시간과 장소에 공증인에게 직접 문서를 제시하고, 그 개인은 공증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신분에 관한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sup>22)</sup> of identity)에 의해 신분확인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증행위를 의미한다.<sup>24)</sup>

### 4)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이라 함은 공증인이 개인에 관한 이하의 사실을 확인 또는 확정하기 위하여 공공기록(public record) 또는

생사혼인기록(vital record)을 검토하는 공증행위를 의미한다: (a) 출생일자, (b)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성명, (c) 혼인이나 이혼날짜, (d) 혼인 상대방의 성명 등.<sup>25)</sup>

### (2) 연방법상의 공증인의 권한

연방법상 규정된 공증인 관련 규정은 이하와 같다.

다양한 연방법률은 특정인이 공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 ① 미 영사(consular offices)는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공증사무를 할 권한이 있다.<sup>26)</sup>
- ② 법무장관이 공증인이 미이민법절차에서 선서증언이나 증거개시절차상의 증언을 주관 또는 집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7)</sup>
- ③ 공공은행(national bank) 이사(director)는 공증인 앞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하겠다는 선서증언(oath)을 하여야 한다.<sup>28)</sup>
- ④ 미연방법률 제10편(Title 10)에서는 일반



21) Nevin Barich, *Nuts & Bolts: Certificates*, NNA (Jan. 15, 2006). Available at <http://www.nationalnotary.org/news/index.cfm?Text=newsNotary&newsID=847>.

22)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2-7조, 제9-2조.

23) 미국 증거법상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는 '개연성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리키고, 확실 증거(convincing evidence)보다는 덜 엄격한 수준의 증거단계이다.

24) 2002년 통일공증인법 제2-19조, 제9-3조.

25)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2-20조, 제9-6조.

26) 22 U.S.C.A. § 4215.

27) 8 U.S.C.A. § 1443(d).

28) 12 U.S.C.A. § 73.

군법(General Military Law)의 표제하에서 제1044a 조<sup>29)</sup>는 특정 군조직 소속원 또는 관련 민간인이 공증인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⑤ 채광특허신청자의 시민권 선서도 공증인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sup>30)</sup>
- ⑥ 미국 타이완기구(American Institute in Taiwan)<sup>31)</sup>의 직원들은 공증인의 사무를 할 수 있다.<sup>32)</sup>
- ⑦ 국가해양대기부 공무원은 공증인의 사무를 할 수 있다.<sup>33)</sup>
- ⑧ 제5편 정부조직 및 근로자(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하 제 2105 조(정부 근로자)에서 정의된 근로자나 워싱턴 DC정부에 의해 고용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공증인으로서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자들은 관련기관이 설정한 수당(allowance)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 그 수당액은 공증인자격을 취득하

는데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sup>34)</sup>

### 3. 공증인의 책임

공증인의 책임, 제재, 및 구제책에 대해서는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12장에서 7개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만약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공증사무를 행해왔고 공증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사후 공증인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격갱신이 안된 경우, 공증인과 신청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공증인'의 법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sup>35)</sup> 예를 들어, 공증인자격이 만기가 넘고, 갱신을 못하거나 보증금납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공증행위의 계속성, 관련당사자의 선의, 사회적 신뢰성에 기초하여 공증인은 '사실상의 공증인 (a notary de facto)'으로 인정받아 그 공증행위의 법적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이다.<sup>36)</sup>

공증인은 자신이 공증한 문서의 진정성에 의



29) 10 U.S.C.A. § 1044a.

30) 30 U.S.C.A. § 25.

31) 중국의 One-China Policy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새로이 성립시킴으로서, 타이완에 설치된 미국의 사적 기관(private institution)이지만, 사실상 준 공기관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2) 22 U.S.C.A. § 3306(a)(1).

33) 33 U.S.C.A. §§ 875, 876.

34) 5 U.S.C.A. § 5945.

35) *Succession of Galway*, 483 So. 2d 662 (La. Ct. App. 5th Cir. 1986); *Davenport v. Davenport*, 116 La. 1009, 41 So. 240 (1906); *State ex rel. Marquis v. U. S. Fidelity & Guaranty Co.*, 57 Tenn. App. 662, 424 S.W.2d 199 (1966).

36) *Sandlin v. Dowdell*, 143 Ala. 518, 39 So. 279 (1905); *Sousley v. Citizens' Bank of Nepton*, 168 Ky. 150, 181 S.W. 960 (1916); *State ex rel. Marquis v. U. S. Fidelity & Guaranty Co.*, 57 Tenn. App. 662, 424 S.W.2d 199 (1966).



존한 결과 금전손실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sup>37)</sup> 그러나 공증인의 책임은 보증인의 책임이나 보험자의 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sup>38)</sup> 공증인의 책임근거는 고의나 과실 또는 부패(corruption)가 되기 때문이다.<sup>39)</sup>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보증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실현가능한 구제금액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손해액 전체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공증인은 공증인으로서의 법률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범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문서의 작성이나 법률문서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제공한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공증인의 면전에 서 등록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공증인

영을 찍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 4. 텍사스 주의 공증규제<sup>40)</sup>

##### (1) 공증인의 임명과 해임

텍사스 주 법률상 공증인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텍사스 주 국무부장관(Secretary of State)은 언제든지 공증인을 임명할 수 있다.<sup>41)</sup> 공증인 신청자는 텍사스 주 헌법<sup>42)</sup>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선서(oath)를 해야 한다.<sup>43)</sup> 공증인의 임기는 4년이고<sup>44)</sup> 공증인의 법적 관할권(jurisdiction)은 卅 전체적이기 때문에<sup>45)</sup> 임명된 카운티(county)에만 활동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공증인은 적어도 18세이상이어야 하며 텍사스 주 민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sup>46)</sup> 나 '중범죄(felony)'에 대해 유죄확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sup>47)</sup> 공



37) *Garton v. Title Ins. & Trust Co.*, 106 Cal. App. 3d 365, 165 Cal. Rptr. 449 (3d Dist. 1980); *Summers Bros., Inc. v. Brewer*, 420 So. 2d 197 (La. Ct. App. 1st Cir. 1982).

38) *Meyers v. Meyers*, 81 Wash. 2d 533, 503 P.2d 59, 59 A.L.R.3d 1318 (1972); *Villanueva v. Brown*, 103 F.3d 1128 (3d Cir. 1997) (applying New Jersey law).

39) *Werner v. Werner*, 84 Wash. 2d 360, 526 P.2d 370 (1974).

40) 한편, 미국에서 유일한 시민법체계를 갖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의 공증인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갖는 시민법체계의 공증인이다. 따라서 컴먼로상의 공증인의 권한과 전통적인 시민법체계의 공증인의 권한의 중간 정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공증인은 '법적 자문(legal advise)'은 할 수 없지만, 공증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문서가 필요한지 고객에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민법체계상의 공증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그들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공증법률문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41) Tex. Gov' t. Code Ann. § 406.001.

42) Texas Constitution article 16 section 1.

43) Tex. Gov' t. Code Ann. § 406.005.

44) Tex. Gov' t. Code Ann. § 406.002.

45) Tex. Gov' t. Code Ann. § 406.003.

증인은 임기만료 90일 이내에 재임명(reappointment)을 신청할 수 있다.<sup>48)</sup> 이러한 재임명에 대한 횡수제한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90일 이내 재임명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인은 처음부터 새로운 신청절차를 밟아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공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sup>49)</sup>

주 국무부장은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공증인의 임명신청을 거부하거나 직무정지, 또는 임명취소를 할 권한이 있다.<sup>50)</sup> 텍사스 주 정부법(Texas Statutes Government Code) 제406.009조 (d)가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란 구체적으로 (1)비윤리적 행위관련 범죄에 대한 최종유죄확정이 이루어진 경우, (2)공증인임명신청서에 고의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경우, (3)제406.017조상의 권한없이 변호사업무 등을 행한 경우, (4)텍사스 주나 타주에서 공증인의 행위규제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유죄확정된 경우, (5)공증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벌금형

을 부과받은 경우, (6)공증행위를 실시할 때 공증인의 면전에 공증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공증을 해 준 경우 등을 가리킨다.<sup>51)</sup>

## (2) 공증인의 권한

텍사스 주 정부법(Texas Statute Government Code) 제406.016조는 공증인 사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증인은 엄격하게 본조에서 지정된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한편, 활동관할권은 주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주 내의 타 카운티(county)에서도 공증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sup>52)</sup> 텍사스 주 정부법 제 406.016조는 공증인은 인정(acknowledgment)을 행하고, 선서(oath)와 증언(deposition)을 집행하며, 유가증권에 대한 항변(protest)<sup>53)</sup>을 하고, 공공기록부에 기록될 수 없는 문서복사본의 인증(certify)<sup>54)</sup>을 할 수 있다.<sup>55)</sup>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공증인은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고 법적 자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sup>56)</sup> 텍사스 법률상 변호사



46)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는 커뮤니티의 정의, 정직이나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관련 범죄로서 사기(fraud), 주거침입, 절도, 강도 등 대부분의 고의범죄(intent crime)를 가리키며, 과실범은 대체로 포함하지 않는다.

47) Tex. Gov' t. Code Ann. § 406.004.

48) Tex. Gov' t. Code Ann. § 406.011(a).

49) Tex. Gov' t. Code Ann. § 406.011(b).

50) Tex. Gov' t. Code Ann. § 406.009.

51) Tex. Gov' t. Code Ann. § 406.009 (d)(1) to (6).

52) Tex. Gov' t. Code Ann. § 406.003.

53)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의 유가증권 제시시 지급이나 인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증인의 서면진술임.

54) Tex. Gov' t. Code Ann. § 406.016(a)(5). 한편, 출생증명서나 혼인허가증은 공공기록부에 기록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공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5) Tex. Gov' t. Code Ann. § 406.016.



가 아닌 공증인이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자신이 변호사라고 암시해서도 안되며,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타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관련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기도록 권유하거나 이러한 일에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sup>57)</sup>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절차에서 서면으로 증언(deposition)질의를 받은 증인(witness)은 공증인 앞에 나가 선서를 하고 유효한 증언(deposition)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증인은 증인의 선서하에 서면질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기록하고 그 증언원고(deposition transcript)를 텍사스 민사소송규칙 제203조(Rule 203 of the Texas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준비,인증 및 전달하여야 한다.

### (3) 공증인의 의무

공증인의 주된 의무는 서명하는 당사자들의 행위를 증명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제3자로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공증행위를 할 수 없다. 공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요금목록<sup>58)</sup>을 계속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하고,<sup>59)</sup> 법률에 명시된 각 공증행위 항목별 요금을 초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sup>60)</sup>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여부에 상관없이 공증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sup>61)</sup> 공증기록부에는 문서공증일, 공증서명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고, 공증서명자가 개인적으로 평소 알던 자인지 아니면 신상증명카드(identification card) 등에 의해 신분이 확인된 자인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sup>62)</sup> 공증인은 기록의무를 전자적으로 컴퓨터나 기타 저장장치로서 이행할 수 있다.<sup>63)</sup>

또한 공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공증사무에 인영(印影 :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sup>64)</sup> 인영은 필수내용(“텍사스 주 공증인(Notary Public, State of Texas),” 공증인의 성명, 공증인의 임명만료일)을 포함하여야 하고<sup>65)</sup>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야 판독가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sup>66)</sup> 공



56) Tex. Gov' t. Code Ann. § 406.016(d).

57) Tex. Gov' t. Code Ann. § 406.017.

58) Tex. Gov' t. Code Ann. § 406.024는 구체적으로 11개 각 공증행위 항목에 대한 최대부과요금을 규정하고 있다.

59) Tex. Gov' t. Code Ann. § 603.008.

60) Tex. Gov' t. Code Ann. § 406.024(b).

61) Tex. Gov' t. Code Ann. § 406.014.

62) Tex. Gov' t. Code Ann. § 406.014.

63) Tex. Gov' t. Code Ann. § 406.014(e).

64) Tex. Gov' t. Code Ann. § 406.013(a).

65) Tex. Gov' t. Code Ann. § 406.013(a).

증인의 서명과 인영은 사실을 확정적으로(conclusively)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증거요건을 충족시킴으로(prima facie proof), 반증이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되게 된다. 공증인이 주소지를 바꾼 경우에는 주소지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주 국무부장관에게 주소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sup>67)</sup>

#### (4) 공증인의 책임

텍사스 공증인의 보증금은 \$10,000 으로서 공직업무시작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sup>68)</sup>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관한 과실이나 사기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고 공증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적어도 보증금액(예를 들어, 텍사스의 경우 1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증인의 책임은 보증금액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전체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민사책임에 더하여 공증인은 형사소추 및 직무정지나 자격박탈을 받을 수 있다.<sup>69)</sup> 특히, 텍사스 정부법 제 406.017조 상 금지된 변호사업무 등을 행한 공증인은 A등급의 경범죄(misdemeanor)를 성립하고 만약 이전 동일종류에 대한 범죄경

력이 있는 경우에는 3등급 중범죄(3<sup>rd</sup> degree felony)에 해당하게 된다. 동시에 '텍사스 비즈니스 및 상사법(Texas Business & Commerce Code)' 제17장하에서의 '사기적 사업행위(deceptive trade practice)' 상의 책임까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으로서 공증인이 된 자가 아닌, 기존 공무원 중에 주정부기관에 의해 공증인으로 지정된 주공무원은 2002년 9월 1일부로 더 이상 공증인 보증금(bond)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sup>70)</sup> 대신에 이러한 공증인이 직무범위내에서 업무상 행한 행위(부작위포함)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한 경우, 주정부가 공증인을 대신하여 소송상 방어(defense)를 하게 되고,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법원비용 등을 책임지게 된다.<sup>71)</sup>

### III. 공증관련 통일법 및 모델법

#### 1. 공증관련 통일법 및 모델법의 발달연혁

현재까지 미국의 공증관련법은 먼저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와 전미공증인협회(NNA)



66) Tex. Gov' t. Code Ann. § 406.013(c).

67) Tex. Gov' t. Code Ann. § 406.019.

68) Tex. Gov' t. Code Ann. § 406.010.

69) Tex. Gov' t. Code Ann. § 406.009.

70) Texas H.B. 1203 effective on Sept 1, 2002.

71) Texas Statutes Civil Practice and Remedies Code § 104.001.

양대 기관에 의해 통일법 내지 모델법이 만들어 지고 개발되고 있으며, 각 주는 이를 선택적으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는 1892년에 발족된 이후, 수개에 이르는 모델법률을 만들어 주 입법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하의 모델법은 모두 전미통일주법위원회나 또는 전미공증인협회(NNA)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 1892년 통일인증법(Uniform Acknowledgments Act of 1892) - 개인, 사실상의 변호사, 기업 등 3가지 형태의 인증 및 실행을 위한 인증용어를 제시함.
- 1914년 통일외국인증법(Uniform Foreign Acknowledgment act of 1914) - 미국 밖에서 공증된 문서에 대한 인증절차를 제시함.
- 1939년 통일인증법(Uniform Acknowledgment Act of 1939) - 1892년과 1914년 법을 결합시켜 주 안팎으로 인증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리스트와 인증에 필요한 언어를 제시함.
- 1968년 통일인증인정법(Uniform Recognition of Acknowledgments Act of 1968) -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5가지 약식인증서 형식을 제시함.
- 1973년 통일공증인법(Uniform Notary Act of 1973) - 사상 최초로 공증행위와, 공증인에 대한 주차원의 규제를 위한 규칙을 확립

한 종합적인 모델법

- 1982년 공증행위에대한통일법(Uniform Law on Notarial Acts of 1982) - 다른 종류의 공증행위를 정의하고 주 안팎으로 공증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함.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이 기존의 통일인증인정법과 통일인증법을 통합하여 만들었음.
- 1984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 of 1984) - 전미공증인협회의 1973년 법에 대한 상당한 개선과 확대
- 2002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 of 2002) -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하고 정밀한 모델법으로서 최초로 전자공증에 관한 규칙을 확립함. 전미공증인협회가 만들었고, 가장 최근의 모델법임.

## 2. 1982년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Uniform Law on Notarial Acts of 1982)

본 1982년 통일법은 본래 기존의 두개의 통일법, 즉 통일인증법(Uniform Acknowledgment Act)와 그 후의 통일인증인정법(Uniform Recognition of Acknowledgments Act)을 통합, 확장, 근대화한 것으로서, 공증이나 서명확인 등의 형식을 단순화 및 통일화시키고, 일반적인 공증행위를 정의하며, 타주와 외국관할권에서 이루어진 공증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본 법은 공증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선발절차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증행위는 제2조에서 기술되고, 제3조는 공증인이외에 주 내에서 공증 사무를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며, 제 4,5,6조는 타 관할권에서 임명된 공증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인정(recognit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와 미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본 통일법안을 승인한 이래, 유감스럽게도 오직 11 개주<sup>72)</sup> 만이 본 통일법안을 채택하였을 뿐이다. 이번 2008년 7월 1일에는 와이오밍 주가 기존의 인증법률(Wyoming Acknowledgment Act)을 폐지하고 본 통일법으로 대체하여 통일법안을 채택한 12번째 주가 되었다.<sup>73)</sup> 본법은 1982년이후로 아직까지 특별한 개정을 하지 않았다. 전미 통일주법위원회(NCCUSL)에 의해 마련된 본 통일법은 다음과 같이 총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의(Definitions).
2. 공증행위(Notarial Acts).
3. 본 주에서의 공증행위(Notarial Acts in This State).
4. 미국내 타 관할권에서의 공증행위(Notarial Acts in Other Jurisdictions of the United States).
5. 연방권한하의 공증행위(Notarial Acts Under Federal Authority).
6. 외국공증행위(Foreign Notarial Acts)<sup>74)</sup>.
7. 공증행위의 인증서(Certificate of Notarial Acts).
8. 약식문서형식(Short Forms).
9. 본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증행위(Notarial Acts Affected by This Act).
10. 적용과 해석의 통일성(Uniformity of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11. 소재(Short Title).
12. 폐지(Repeals)<sup>75)</sup>.
13. 효력발생일(Time of Taking Effect).



72)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Kansas, Minnesota,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Oklahoma, Oregon, Wisconsin.

73) Wyoming state, House Bill 36

74) 본 법 제6조 (b)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61년 10월 5일에 만들어진 헤이그 협약에서 제정된 아포스티유(“Apostille”)문서형식은 결정적으로 공증 공무원의 서명은 진정한 것이며(genuine), 해당 공무원은 공증업무를 실시함을 확립한다.”

75) 본 법에 의해 개정통일인증법(The Uniform Acknowledgment Act (As Amended))과 통일인증인정법(The Uniform Recognition of Acknowledgments Act)이 폐지된다.



본 법의 핵심을 이루는 제2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2). 공증행위(Notarial Acts).

- (a) 인정(acknowledgement)을 접수함에 있어서, 공증공무원은 개인적 지식이나 충분한 증거에 의거하여 자신앞에 나타나 서명이 진실성을 인정하는 개인이 법률 문서상 진실한 서명의 주체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 (b) 선서증언(oath)에 기초한 진위확인이나 무선서증언(affirmation)을 접수함에 있어서 공증공무원은 개인적 지식이나 충분한 증거에 의거하여 자신앞에 나타나 진위확인을 하는 개인이 진위확인된 진술문서상 서명의 주체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 (c) 서명(signature)을 증인으로로서 목격하고(witnessing) 인증(attesting)할 때, 공증공무원은 개인적 지식이나 충분한 증거에 의거하여 서명이 자신앞에 나타나고 성명이 기재된 바로 그 사람의 것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 (d) 문서의 복사본(a copy of a document)이나 기타 종류를 인증(certifying or attesting)할 때, 공증 공무원은 제공된 복사본

이 전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한 등본(transcription) 또는 복사된 등본의 재생산(reproduction)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 (e) 유가증권의 항변(protest)을 할 때, 공증공무원은 통일상법전(UCC 제3-509조상)에 열거된 사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 (f) 공증 공무원은 만약 (i) 해당개인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ii) 공증인이 알고있는 믿을만한 증인의 선서증언 또는 확인에 의거 신분이 확인되거나, (iii) 신분확인 문서에 기초하여 신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개인이 문서상의 진실한 서명의 주체라는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본 법은 공증사무는 미국의 타 주에서도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6)</sup> 즉, 해당 관할권하의 공증인, 법원 관사나 법원행정공무원(clerk), 또는 그 관할권안의 법에 의해 공증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의 공증사무는 타주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더 나아가 연방법상의 권한하에서 미국의 특정 관할지역에서 행해진 공증사무도 마찬가지로 타 주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sup>77)</sup> 예를 들어, 해외 영사에 의해 이루어진 공증사무는



76) Uniform Law on Notarial Act § 4(a).  
77) Uniform Law on Notarial Act § 4(b).

미 전역에서 법적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sup>78)</sup>

최근에는 ‘미공증인협회(USNA)’<sup>79)</sup>는 ‘전미주 법통일위원회(NCCUSL)’에게 광범위한 법발달과 지난 25여년간 공증사무에 영향을 끼쳤던 광범위한 법, 상업, 및 기술상의 진보들을 고려하여 개정작업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첫단추로서 그들은 연구위원회(Study Committee)를 발족시켰고, 연구위원회는 2007년 8월 14일 비로소 법안작성 위원회(drafting committee)를 구성하게 되었다. 본 법안작성위원회의 목적은 1982년 통일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기술상의 진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증인의 책임, 전자적 기록, 주 상호간의 인정 및 구제책에 관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된다.

### 3. 2002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

#### (1) 개요

모델법 중 가장 최근에 전미공증인협회(NNA)<sup>80)</sup>가 만든 2002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이 있는데 현재까지 8개 주<sup>81)</sup>가 본 모델공증인법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사용

하고 있다.

2002년 모델공증인법은 공증인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본 재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현대 공증의 필요에 충족하도록 한 단계 진보되었다. 본 모델법은 29명의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5년여간의 수고의 결실로 만들어졌고,<sup>82)</sup> 1973년 통일공증인법(Uniform Notary Act)과 그 후속판인 1984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상당히 향상시키고 확대하였다. 본법은 전자공증의 새로운 중요영역을 다루고 모델규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자녀입양과 같은 국제적 법률행위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하는 의무, 즉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과 같이 이전의 모델법에서 없었던 공증행위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 (2) 2002년 법의 목차

본법은 총 23장으로 구성된 대단히 정교하고 방대한 모델법이다. 장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 1편(Article I) 시행과 정의 제 1장 시행
- 제 2장 본법에서 사용된 정의
- 제 2편(Article II) 공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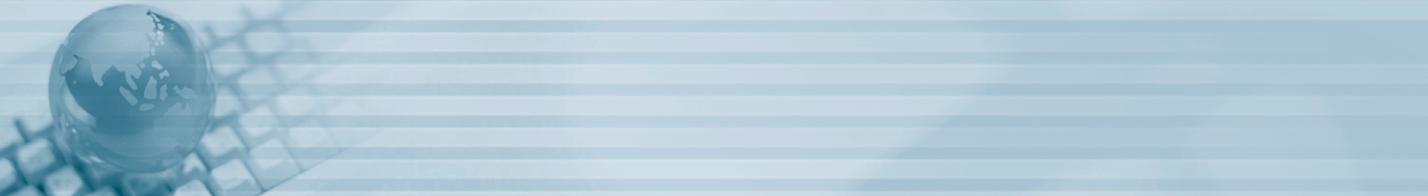
78) Uniform Law on Notarial Act § 5(a).

79) 미국공증인협회(United States Notary Association (USNA))는 2002년 9월에 전미에 걸쳐 공증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훈련, 공증 사무용품 등의 제공을 위해 발족했다. 멤버가입비용은 1년에 36달러, 2년에 66달러 등의 유료회원제이다.

80) 전미공증인협회는 1957년도에 설립되어 19만명이 넘는 구성원으로 조직된 협회로서 미공증인 교육, 서비스, 권리옹호 등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81) the states of Colorado, Kansas, New Mexico, Massachusetts, Minnesota, North Carolina, Nebraska and Virginia.

82) <http://www.allbusiness.com/government/government-bodies-offices-legislative/5992401-1.html> (Sept. 24, 2002)



- 제3장 공증인 임명
- 제4장 공증인 임명을 위한 신청
- 제5장 공증인의 권한과 제한
- 제6장 공증인의 요금
- 제7장 공증행위 일지
- 제8장 공증인 서명과 인영
- 제9장 공증행위의 인증
- 제10장 공증행위의 진정성 증거
- 제11장 공증인의 신분변경
- 제12장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책임, 제재, 구제책
- 제13장 비공증인에 의한 위반

제3편(Article III) 전자공증인

- 제14장 본 편에서 사용된 정의
- 제15장 전자공증인의 등록
- 제16장 전자공증행위
- 제17장 전자공증인의 요금
- 제19장 전자공증행위의 기록
- 제20장 전자공증행위의 증거형식
- 제21장 전자공증인 신분변경
- 제22장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제재, 구제책
- 제23장 전자공증인이 아닌 자에 의한 위반

(3) 2002년 법의 주요사항

본 모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사항을 새로 제정한 데에 있다.

- 제1편 공증실행 및 정의라는 표제에서, 핵심적인 공증용어를 정의 내렸다. 특히, “면진성(personal Appearance),” “신분에 관한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 of Identity)<sup>83)</sup>,” “공식적인 위반행위(Official Misconduct)”가 그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증행위를 소개했는데 이전 전미공증인협회의 모델법에서는 없었던 2가지가 바로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과 사실진위 확인(verification of fact)가 그것이다.
- 제2편 공증인 표제에서는 공증인 신청자에 관한 자격, 교육 및 보증금납입 요건을 규정하고, 공증행위의 권한사항, 금지사항, 자격박탈요건 등을 정의하고, 공증인 일지(Notary journal)과 공증 인증서(notarial certificates)에 관한 형식을 제시하였다. 제9장 공증행위의 인증부분에서는 6가지 인증행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 일반 인정(acknowledgment), 선서인증(jurat), 서명증인(signature wit-



83)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의 개념은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2-17조에서 이하의 예에 기초한 신분확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첫째, 적어도 연방정부, 주정부, 부족 등의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개인의 얼굴사진이미지, 서명, 신체묘사(신체적 묘사가 없더라도 적절하게 인영이 찍힌 여권은 가능)을 포함한 현재의 문서에 기초할 것, 또는 둘째, 문서나 거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을 만한 증인의 선서증언이나 확인으로서, 그러한 증인을 공증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 증인이 또한 해당개인을 개인적을 알고 있는 경우 등이다.

nessing), 마크(표시)의한 서명자와 서명할 수 없는 자(Signer by Mark and Person unable to sign)<sup>84)</sup>, 복사본 인증(Certified Copy), 사실 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등.

- 제3편 전자공증 표제하에서는 전자 공증인의 교육과 자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전자적으로 공증행위를 실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전자적 형태로 공증행위의 일지(journal)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2002년 모델법의 중요한 부분은 서명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공증의 공증일지에 관한 접근권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본 법은 공증인이 확인하거나 서명된 요구서면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증일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sup>85)</sup> 서명된 요구서면은 문서의 년, 월, 종류와 공증신청한 본인의 성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서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증인은 범죄의사나 해로운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을 거절할 수 있다.<sup>86)</sup>

공증인이 자신의 업무를 컴퓨터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본 법은 공식적인 공증행위를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규정을 두었다.<sup>87)</sup> 특별하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본 법은 지문채취 스캐너와 같은 일정한 형태의 생물학적 측정 안전장치를 의무화하여 공증인의 이외의 사람은 공증일지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였다. 또한 전자적 목록은 한번 입력하면 변경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공증일지 목록의 프린팅이나 접근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규제기관에 등록된 암호나 기타 접근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IV. 전자공증제도

### 1. 전자공증제도의 개요

#### (1) 의의

전자공증제도란 지금까지 공증인이 종이문서를 전제로 행하여 온 “사서증서를 인증한다”,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정관을 인증한다”,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한다” 등과 같은 공증업무를 현대의 고도 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새롭게 電磁的 기록(전자문서)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3편은 8개장을 할애하여 전자공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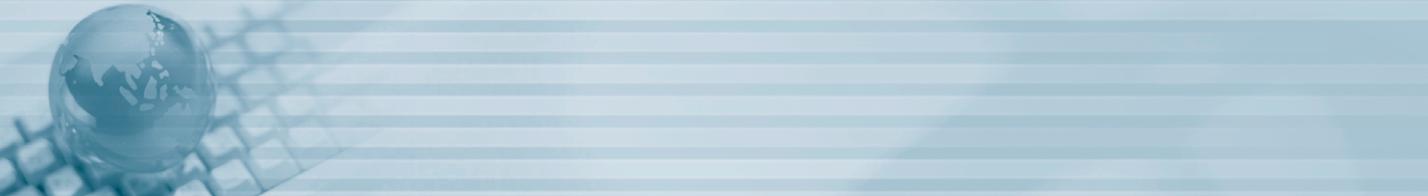


84) 마크(표시)에 의한 서명자의 경우, 공증인과 두 사람의 증인이 그 마크를 인증하는 것이고, 서명할 수 없는 자의 경우 공증인이 그런 자를 대신하여 그런 자의 면전에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서명행위를 대행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85)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7-4(a)조

86)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7-4(b)조

87)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18-1조.



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모델공증인법 제14-5조는 전자공증행위와 전자공증을 ‘전자문서에 관련된 전자공증인에 의한 공식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본법 제14-2조는 전자공증인은 ‘임명행정기관에 본법규정에 따라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할 능력을 등록한 공증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1조는 전자공증의 종류에 대하여 본법의 공증행위 중 4가지, 즉 인정(acknowledgment), 선서인증(jurat), 서명증인(signature witnessing),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을 전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의 소송법상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연방민사절차법(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26조와 제34조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제시에 관한 핵심적인 조항인데, 전자공증제도는 수많은 전자정보제출 및 수집에 관한 당사자간의 막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자공증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로 세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sup>88)</sup> 첫째, 전자적 기록 및 보관(Electronic Recording), 둘째, 공증인에 의한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분, 자발성, 공증의지 등의 확인(Screening), 셋째,

전자문서에 대한 최종 공증인증서의 부착행위(E-Notarization) 등이 그것이다.

첫째 항목인 전자문서의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 전미공증인협회(NNA)는 전자공증을 공증행위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미 전자공증이 미 전역에 보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많은 수의 공증인들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현실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위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한 전미에 걸친 기준이 기술상, 안전상, 제도상 기타 여러 관련현실의 복잡성으로 법률상 확립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a) 전자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등 작동되는 기술의 종류문제, b) 이러한 데이터 등의 처리,보관,통일,안전,기밀유지,감사에 적용가능한 통제 프로세스 및 기술절차, c) 타 관할권 및 기관과의 상호간 전자문서 호환성, 기술조화, 사무처리의 일관성, 공개기준의 사용가능성 여부 등이 걸림돌로 제기되어 왔다.

## (2)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ULONA)’ 개정 논의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ULONA)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전미공증협회(NNA)의 입장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론이었다.<sup>89)</sup> 첫째, 통일전자



88) <http://www.nationalnotary.org/userimages/MIT-eNot0106.pdf>.

89) Study Committee on Revision of the Law on Notarial Acts Stakeholders' Meeting, April 17, 2007, Available at [http://www.law.upenn.edu/bll/archives/ulc/ulona/2007april17\\_stakeholdersminutes.pdf](http://www.law.upenn.edu/bll/archives/ulc/ulona/2007april17_stakeholdersminutes.pdf).

거래법(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과 연방전자서명법(Federal E-SIGN law)은 이미 공증인이 공증행위에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미국무장관연합은 각주국무장관, 공증규제위원, 연방정부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미전자공증위원회(the National E-Notarization Standards)를 설립하여 전자공증에 대해 연구하고 권고기준안을 작성한 결과, 2006년 여름 전자공증에 대한 전미 기준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ULONA)’가 지금 모든 공증행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본 전자규정을 포함시키는 통일공증법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서면에 기한 공증행위와 전자적 장치에 기한 공증행위간에 구별을 만듦으로써 공증행위의 인정에 장벽을 실질적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넷째, 더 나아가1961년 헤이그 협약(the 1961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을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도 ‘국제私法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은 본 협약이 중

이문서와 전자문서 모두에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다.

아무튼, 현재 전미통일주법위원회는 법안작성 위원회를 발족시켜 ‘1982년 통일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3) 전자공증제도의 현황

미국의 전자공증(electronic notarization) 프로세스, 절차 및 시스템은 아직 미국의 모든 주에 걸쳐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나 법적 인프라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고 전미공증인협회 등의 기술보급 등과 함께 점차 각 주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개략적으로 각 주의 입장을 나누어 보면,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과 기존 공증인법률에 신설된 전자공증조항을 근거로 하여 전자공증행위를 인정하는 텍사스 등의 다수의 주와, 아직 전자적 공증서명조차 가능하지 않아 전자공증제도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주<sup>90)</sup>, 그리고 전적으로 독립된 전자공증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자공증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하의 다섯 여개 주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Pennsylvania, Colorado, North Carolina, Florida<sup>91)</sup>, New Mexico 등이 공식적인 전자공증



90) 전자적 공증인서명(ENS: electronic notary signatures)은Alaska, Delaware, Illinois, Iowa, Kansas, Louisiana, Montana, Nebraska, Nevada, New York, Ohio, Oregon, Washington, and West Virginia 등의 주에서는 아직 가능하지 않다.

91) 플로리다 주는 2008년 전자공증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수년동안 플로리다 주는 새로운 공증법과 절차 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 새 법률은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는 전자거래세계에서, 플로리다 공증인을 ‘신뢰받는 증인(trusted witness)’으로 확립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플로리다는 전자공증의 영역에서 선구자 무리에 속한다. 1990년대 플로리다



법률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sup>92)</sup>

현재 미국에서 전자공증제도가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에는 여러 단계의 법발달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1999년 ‘전미통일주법위원회(NCCUSL)’에 의해 통일전자거래법(UETA)이 소개되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에 의해 입법화되고, 2000년에 연방정부가 ‘글로벌 및 전미 상거래상 연방전자서명법(E-Sign)’을 제정함으로써 거래당사간에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전자적으로 서명된 대부분의 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위 두 법에 의해 비록 당사자간에 전자 문서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가능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전자문서가 각 주의 부동산등기소에서 유효하게 기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이 존재하였다. 기술수준상 부동산 양도계약서, 모기지관련 문서, 약속어음 증서 등이 전자적 문서로 거래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미통일주법위원회는 2004년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 URPERA)<sup>93)</sup>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본 법은 전자적 문서 및 서명을 종이문서 원본 및 그 서명과 동일시하고, 등기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전자적 등기 및 기록을 시행하는 기준을 세웠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을 관리하는 카운티 등기공무원과 담당자들이 부동산관련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들을 승인하고 저장하며 부동산등기사항을 전자적으로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로서 입법적 차원에서 수평적 및 수직적 전자공증 실행의 기초가 마련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02년 모델공증인법과 2006년 전미전자공증기준은 전자공증행위와 전자공증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2005년 전미각주 국무부장관협회는 전미전자공증위원회(the National eNotariz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2006년 전자공증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모델기준안(standards)을 만들어 미전역에 그 이용성과 채택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플로리다 주의 2008년 전자공증법은 ‘전미각주 국무부장관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주는 전자공증을 도입하는 초기형태의 법률을 만들었다가 법률을 실행할 제반여건의 어려움으로 나중에 폐기되었다. 또한 플로리다는 가장 빨리 전자적 서명과 문서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통일전자거래법(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제정한 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92) 비록 애리조나 주도 전자공증법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한 모델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전자공증을 서명자의 면전성과 공증인에 의한 신분확인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서명자의 디지털 인증서사용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참고 Ariz. Rev. Stat. § 41-356. <http://www.nationalnotary.org/userimages/MIT-eNot0106.pdf>.

93)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은 Arizon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Idaho, Illinois, Kansas, Minnesota, Nevada, New Mexico,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Texas,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등의 주들이 입법화하였고, 이하의 3개 주 즉, Hawaii, Kentucky, Massachusetts 등은 2008년 현재 주 의회계류 중이다.

State (NASS)'가 발간한 전미 기준안을 포함한 최초의 것이었다.

이처럼 연방차원의 E-Sign 법과 주법차원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URPERA)이 전미에 걸쳐 전자공증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전자공증제도의 장애들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94)</sup> 물론,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URPERA)은 부동산등기기관에 의한 전자공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통일공증법(Model Notary Act)는 전자공증인의 인가와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법률 역시 전자공증제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유는 전자적 공증행위에 적용되는 기술진보의 문제, 기술관리절차, 관할권간의 상호호환성에 관련된 문제가 위 법규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 예러, 및 비효율성을 동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각 주들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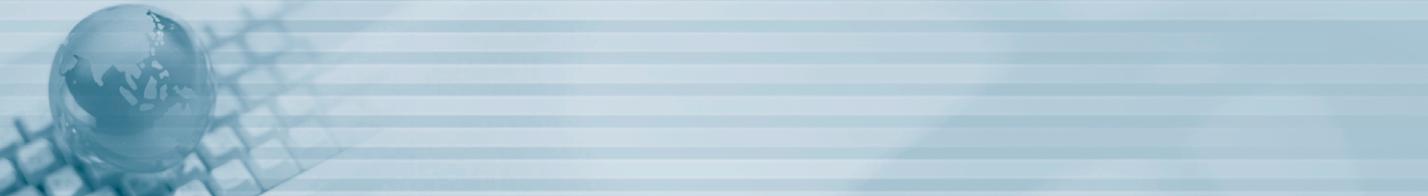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의 주들은 현재 전자공증을 실행하기 위한 '중립적 기술(technology neutral)을 요구하는 법률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립적 기술방식(2008년 1월 효력 발생한 플로리다 주 하원법안 1305를 포함)의 요지는 공증인의 전자공증행위가 안전성과 진정

성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어떠한 형태의 기술(any form of technologies)'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펜실베이니아 주가 2006년 전미공증인협회의 지원으로 최초로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전에 플로리다와 유타와 같은 주에서는 전자공증을 확립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서 의무적으로 '특정형태의 기술'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결국 이러한 접근방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유는 이를 실현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수준으로 수년이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전자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미공증인협회는 전자공증의 기술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2월에 전미공증인협회에 의해 전자공증인영(Electronic Notary Seal) 프로그램이 발족한 이래 2006년 9월까지 펜실베이니아 주와 전미에 걸쳐 전자공증인영(ENS)을 신청하여 받은 공증인은 대략적으로 1000명에 이르러 확산속도가 빨랐으며, 그리고 몇몇 주의 소유권증서 등기 기관들은 전자공증인영으로 공증된 전자문서를 승인하기 시작하였다. 전미공증인협회는 전자공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여러가지 기술 등을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



94) <http://www.nationalnotary.org/userimages/MIT-eNot0106.pdf>.



인 것이 전자공증인영(ENS)<sup>95)</sup> 프로그램, ‘신뢰 등록에이전트(the Trusted Enrollment Agent™ (TEA))’<sup>96)</sup> 프로그램, Enjoa<sup>®97)</sup>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 2. 텍사스 주의 전자공증 관련법

텍사스 주는 펜실베이니아 주나 노스 캐롤라이나 주 등처럼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전자공증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전자공증제도 실시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E-Recording)을 2005년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을 제정함으로써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텍사스 공증인 법인 텍사스 주 정부법 제406.013조 (d)항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 공증을 인정하고 있다.

텍사스 통일부동산전자기록법(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 제15.004 조는 본 법상의 (a)전자문서가 부동산 등기 등의 기록목적상 종이문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b)전자서명의 효력도 종이문서상의 서명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c)만약 본 법상의 문서가 공증되어야 한다면, 전자서명을 할 권한 있는 자가 전자서명을 하고, 필요 내용이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문서에 연합된 경우에 공증의 요건이 만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d) 인영이나 스탬프 등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이미지가 전자적 서명에 동반될 필요는 없다.

공증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텍사스 정부법 제406.013조 (d)항도 이에 상응하여 공증인에 의한 공증인영의 전통적 부착요건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인증된 문서(an electronically transmitted authenticated document)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이러한 전자문서도 인영에 포함되는 “필요사항”은 판독가능하도록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적으로 전송된 인증문서(authenticated document)에 대한 공증인영은 스탬프(stamp)나 직인(press) 등에 의해 부착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 공증인영 방식 등을 허용하고 있다.



95) 전자공증인영(Electronic Notary Seal (ENS))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증인들은 전미공증인협회(NNA)에서 제공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전미공증인협회(NN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미공증인협회는 신청자의 신분 및 대금지급 등을 확인한 후 인가코드(Authorization Code)를 주면서 각 전자공증 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전자공증인영(ENS)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6) 신뢰등록에이전트(TEA)는 전미공증인협회(NNA)가 일정한 백그라운드 검토와 일정 교육이수를 받은 공증인 중에서 임명된다. 신뢰등록에이전트(TEA)자격을 얻은 공증인들은 전자신분 자격증명을 얻고자 하는 사업체거나 개인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해 주는 일을 하면서 그 여행 비용 등을 수익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공증인이 해 주는 (신분)자격증명은 민감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고 다루는 전문직들이 특히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우주항공사 산업체, 제약회사, 의료리서치 기관 등이 전미공증협회의 신뢰등록에이전트(TEA)를 이용하고 있다.

97) Enjoa<sup>®</sup>는 전자공증 장부기록 시스템으로서 안전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 전자인영은 일반 종이문서상의 인영에 포함되는 필요내용(“텍사스 주 공증인”, 공증인 성명, 임명만료일)은 관독가능하도록 나타나야 한다. 이 때, 공증인은 공증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 공증인 면전에 나타나 문서에 서명(sign)하거나 문서상 자신의 서명을 인정(acknowledge)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에 공증인의 전자서명과 전자인영을 부착할 수 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시간, 유타와 함께 전자공증인영을 실시할 수 있는 주이다.<sup>98)</sup>

### 3. 전자공증에 관한 뉴멕시코 주 행정규칙 (New Mexico Administrative Code)

뉴 멕시코 주도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sup>99)</sup> 주처럼 전자공증에 관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뉴 멕시코 주의 규칙<sup>100)</sup>은 전미공증인협회의 ‘2002년 모델공증인법(Model Notary Act of 2002)’ 제3조와 ‘전미 각주 국무부장관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이 채택한 ‘전미전자공증기준(the National E-Notarization Standards)’을 혼합한 것이다. 본 규칙은 전자공증을 실행하고자 하는 공증인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미공증인협회(NNA)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뉴 멕시코 공증인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전미공증인협회의 ‘전자공증인인영(NNA’s Electronic Notary Seal)’은 전자적 인영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뉴 멕시코 주의 특징은 전자공증제도를 ‘통일 부동산 전자기록법(the 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실시한다는 점에 있다. 2008년 5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한 뉴 멕시코 주의 현 행정규칙은 최근의 전자공증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본다. 뉴멕시코 정부는 총 15개 조문을 신설하여 전자공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제12편(TITLE 12) 무역, 상사, 은행업(TRADE, COMMERCE AND BANKING)

제9장(CHAPTER 9) 공증인(NOTARIES PUBLIC)

제2절(PART 2) 전자적 공증행위 실시(PERFORMING ELECTRONIC NOTARIAL ACTS)



98) <http://www.nationalnotary.org/news/index.cfm?Text=newsNotary&newsID=907>.

99)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특히 종이문서에 기초한 공증과 전자공증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전자공증입법을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100) 뉴멕시코 주 행정규칙 제 12.9.2.1조부터 제12.9.2.15조까지 총 15개조.

12.9.2.1 발급기관(ISSUING AGENCY): 주 국무부장관(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12.9.2.2 적용범위(SCOPE): 전자적 공증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등록된 모든 공증인(All notaries public who register to perform electronic notarial acts).

12.9.2.3 법률상의 근거(STATUTORY AUTHORITY): 뉴저지1978년 법률 제14-9A-5 (C) 조.<sup>101)</sup>

12.9.2.4 기간(DURATION): 항구적( Permanent).

12.9.2.5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2008년 5월 30일.

12.9.2.6 목적(OBJECTIVE): 본 규칙의 목적은 기준, 가이드라인, 절차, 요금 및 전자적 공증행위를 실시하려는 공증인의 의무와 책임을 확립하는데 있다. 주 국무부장관은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파이낸셜 기관(financial institutions), 모기지 여신업자(mortgage lenders), 정부 및 사업자들이 의사소통과 생산성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자적 문서로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2.9.2.7 정의(DEFINITIONS):

- A. “전자적(Electronic)” 이라 함은 전자적, 디지털, 마그네틱, 무선, means relating to technology having electrical, digital, magnetic, wireless, optical, electromagnetic, or similar capabilities.
- B.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라 함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송신되고, 의사소통되고,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가리킨다.
- C. “전자공증행위(Electronic notarial act)”라 함은 전자적 공증인이 전자적 문서 및 주 국무부가 인정한 수단사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 D. “전자적업무 가능 공증인(Electronically enabled notary public)” 이라 함은 전자적 공증행위를 실행할 능력이 있음을 주 국무부에 등록한 공증인을 가리킨다.
- E. “전자공증인영(Electronic notary seal)” and “공식전자인영(official electronic seal)” 이라 함은 공증인의 성명, 공증인임명관할권, 자격만기일 등을 포함한 공증된 전자문서내의 ‘정보(information)’ 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종이문서상의 공증인인영에 있는 데이터와 일치한다.



101) 뉴멕시코법률(NMSA) 제 14-9A-5 (C)조.

주 국무부는 통일 부동산 전자기록법 제 14-9A-3 (C) 조(the 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 NMSA 14-9A-3) 상의 규정들을 실시하기 위한 규칙을 다음의 사항 등에 관하여 채택하고 제정할 수 있다: 전자공증, 인정(acknowledgement), 사실확인(verification), 선서선언 또는 선서확증(swearing or affirming under oath), 기타 문서나 서명에 관한 공증인에 의한 공증행위 등.

- F.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고, 전자문서나 기록에 서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실행 또는 선택한 전자적 음성, 상징 또는 프로세스를 가리킨다.
- G. “전자공증인증서(Electronic notarial certificate)”이라 함은 공증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공증인의 전자서명이나 ‘공식전자인영(official electronic seal)’, 공식 명칭, 자격임명만료일 및 기타 전자공증의 날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해당 전자공증에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실을 기술한 ‘공증된 전자문서의 부분(portion)이다.’
- H. “공증인 전자서명(Notary electronic signature)”이라 함은 주 국무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전자적 서명의 형태로서, 전자적 공증인이 공증인의 공식서명을 공증되고 있는 전자기록에 부착하기 위한 수단이다.
- I. “면전성(Physical appearance)” 및 “(공증인 앞에 나타남(appears before the notary))”이라 함은 공증신청자와 공증인이 전화,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또는 팩스 기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보고, 듣고, 의사소통하고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 J. “공증인에게 고유한(Unique to the notary public)” 및 “배타적 통제하(under the sole control)”란 전자공증에 있어서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된 서명장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공식적인 전자인영정보가 손댄 흔적이 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공증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인증된 전자공증에 참여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에 배제된다는 의미에서이다.
- K. “인정(Acknowledgment)”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증행위이다: ‘개인이 특정시간과 장소에 직접 공증인에게 직접 문서를 제출하고, 그 개인은 평소 공증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에 의해 공증인이 확인한 개인이어야 하며, 그 개인이 공증인에게 문서상의 서명이 문서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특정한 대리권한에 의거하여 서명된 것이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 L. “무선서증언(확인:Affirmation)”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증행위이다: ‘이는 선서증언(oath)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equivalent)를 갖는 것으로서, 개인이 특정시간과 장소에 직접 공증인 앞에서 나타나고, 그 개인은 개인적으로 공증인이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에 의해 공증인이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 명예에 기초할 뿐, 어떤 형태라도 ‘선서(swear)’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성을 연관시키지 않고, 다만 위증시 처벌에 기초한 진실성 또는 성실함을 맹세하는 것이다.

M. “선서인증(Jurat)”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증행위이다: ‘개인이 특정시간과 장소에 직접 공증인 앞에서 나타나 문서를 제출하고, 그 개인은 평소 공증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충분한 증거(satisfactory evidence)에 의해 공증인이 확인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개인은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서명을 부착하였으며 서명된 문서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이다.’

#### 12.9.2.8 면전성 요건 (PHYSICAL APPEARANCE REQUIREMENT):

- A. 공증인은 만약 문서서명자가 공증행위시에 직접 공증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공증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어떤 사정하에서도 서명자가 공증인 앞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때에는, 공증인은 신분확인에 있어서 서명자의 전자적 서명을 확인하는 전자확인절차나 서명자의 전자적 서명의 익숙함에 기초하여 본인확인을 해서는 안된다.
- B. 전자서명을 위해서 문서서명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문서공증에 요구되는 방법과 동일해야 한다.

#### 12.9.2.9 등록 요건(REGISTRATION REQUIREMENTS):

- A.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공증인은 전자적으로 공증할 능력이 있음을 주 국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규정한 형식에 맞추어 주 국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B.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등록할 때, 공증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 국무부장관 공증인 절차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현재 임명된 성명과 주소;
  - (2) 공증인임명만기일과 임명된 공증인서명의 만기일;
  - (3) 연방정부 교육부의 지속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가위원회(ACCET)를 통해 제공된 전자공증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증거;
  - (4) 전자공증인증서를 전자문서에 부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전자적 기술에 대한 설명;
  - (5) 공증인의 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부착시키는데 사용되는 전자적 기술에 대한 설명;
  - (6) 공증인의 전자서명과 공식전자인영의 예시물(an exemplar)로서 공증인의 성명과, 공증인의 전자서명이나 공식전자인영을 판독가능케 하는 필요한 지침 또는 기술;
  - (7) 전자공증인영을 발급하는 사업자(vendor)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 사업자는 뉴 멕시코 주에 사업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 (8) 전자공증관련 장치(device)의 등록계약조건상의 출발일과 만료일, 그리고 장치의 오용(misuse or compromise) 등으로 인한 등록자의 등록장치의 취소, 무효 또는 어떤 기간만료전 계약과기사실 등(구체적으로 날짜, 원인, 각 계약과기의 성질에 대한 설명첨가)

## 12.9.2.10 전자공증행위의 종류(TYPES OF ELECTRONIC NOTARIAL ACTS):

- A. 인정(acknowledgments)
- B. 선서인증(jurats)
- C. 선서증언(oaths) 또는 무선서증언(확인:affirmations)

## 12.9.2.11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하는 형식과 방법(FORM AND MANNER OF PERFORMING THE ELECTRONIC NOTARIAL ACT):

- A.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할 때, 공증인은 전자서명을 기재하고 그 서명은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그러한 전자서명의 제거나 변경이 탐지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공증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공증인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그 변경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sup>102)</sup>
- B.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할 때, 공증인은 '전자공증인증서(electronic notarial certificate)' 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전자공증인증서는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그러한 전자공증인증서의 제거나 변경이 탐지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공증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공증인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그 변경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C. 공증인의 전자서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1) 전자서명이 공증인에게 고유(unique)할 것;
  - (2) 객관적인 진위확인(independent verification)이 가능할 것;
  - (3) 공증인의 배타적인 통제하에 보유하고 있을 것;
  - (4)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것; 그리고
  - (5) 어떤 해당문서의 전자공증인증서에 대한 사후적 변경이 탐지가능하고 그 전자공증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연결(link)되어 있을 것
- D. 전자공증 행위를 실시할 때, 공증인은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전자인영(electronic seal)을 붙여야 하고 그 전자인영은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그러한 전자공증인증서의 제거나 변경이 탐지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공증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공증인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그 변경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E. 공증인의 전자인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1) 전자서명이 공증인에게 고유(unique)할 것;
  - (2) 객관적인 진위확인(independent verification)이 가능할 것;
  - (3) 공증인의 배타적인 통제하에 보유하고 있을 것;
  - (4)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것; 그리고

- (5) 어떤 해당문서의 전자공증인증서에 대한 사후적 변경이 탐지가능하고 그 전자공증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연결(link)되어 있을 것
- F. 인영의 전자적 이미지는 전자서명을 동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G. 공증인의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인영과 함께 오직 전자공증행위를 실시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2.9.2.12 요금(FEES):

- A. 인정(For acknowledgments), \$10.00
- B. 선서인증(For jurats)<sup>103</sup>, \$10.00
- C. 선서증언이나 무선서증언(For oaths or affirmations), \$10.00
- D. 본 규칙내에서 특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전자공증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고용주가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
- E. 전자공증행위를 실행할 때 공증인은 본 조에서 지정된 최고 또는 최저 액수를 부과하거나 요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12.9.2.13 이메일 주소변경(CHANGE OF E-MAIL ADDRESS): 전자공증자격있는 공증인이 이메일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은 그 변경 5일 이내에, 공증인 공식전자서명이 된 주소변경통지를 주 국무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12.9.2.14 부적절한 전자공증에 관한 책임, 제재 및 구제책(LIABILITY, SANCTIONS AND REMEDIES RELATING TO IMPROPER ELECTRONIC NOTARIZATIONS): 부적절한 전자공증에 관한 책임, 제재 및 구제책은 뉴 멕시코 공증인 핸드북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12.9.2.15 전자공증을 실행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위반(VIOLATION BY PERSON NOT REGISTERED TO PERFORM ELECTRONIC NOTARIZATIONS): 주 국무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전자공증을 실행하는 것은 뉴 멕시코 공증인 핸드북에 기술된 제재를 받는다.



102) 번역상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문장을 복수화시킴.

103) 저자 주 : 선서인증(Jurat)이란 공증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 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증거에 의해 신분이 증명된 서명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서명된 문서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선서증언 또는 무선서증언(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공증행위이다.

#### IV. 1961년 10월 5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sup>104)</sup> (이하 'Apostille 협약' 이라 함)

한편, 국제 공증에 관하여 '외국의 공문서에 대한 인증(legalization)요구 폐지에 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for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외무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알려진 인정행위(act of certification)만 있으면 된다. 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문서를 직접 보낸 외무부에서 진정성인증(Authentication)을 하거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2007년 7월 14일 헤이그 협약에 90번째 체결국으로 가입하였다.<sup>105)</sup> 그리고 조약 제6조에 따라, 한국은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본 조약 제3조 첫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인증(certificate)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기관으로 지정하였다.<sup>106)</sup>

미국은 1981년 10월 15일 본 협약에 가입하였다. 본 협약은 가입국에 대한 단순화된 형태의

외국공문서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국은 상대방 가입국가가 공문서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서식(Apostille로 알려진)을 부착하면, 그 문서의 진정성을 상호간에 인정하기로 약속한 다자조약이다. 일종의 첨부서면이라 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자국에서 발급된 공공문서가 타국에서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82년 공증행위에관한통일법에서 아포스티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본 협약에 의하여 가입국은 자국 영역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증(legalization)을 면제받는다. 국무부가 발급한 인증첨부서면(Apostille)은 한 페이지의 국가날인이 된 문서이다. 본 협약은 체결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체결국에 제공되는 공문서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여, 성가진 절차상의 문제와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sup>107)</sup> 현재 총93개의 체결국이 있다.<sup>108)</sup>

#### V. 맺는 말

미국의 공증제도는 로마법에서 기원했음을 인



104) 한국은 이에 가입하여 조약이 되었지만, 국제적 시각으로 본고에서는 협약으로 통칭하기로 함.

105) 대한민국 조약 제1854호.

106) [http://www.hcch.net/index\\_en.php?act=authorities.details&aid=706](http://www.hcch.net/index_en.php?act=authorities.details&aid=706).

107) [http://www.hcch.net/index\\_en.php?act=text.display&tid=37](http://www.hcch.net/index_en.php?act=text.display&tid=37).

108) 일본은 1970년 7월 27일에 가입하였고(ratification), 중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하면서도 Common Law의 배경하에 성장하여 주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공증인을 임명하여 공증인자격요건이 간소하면서 그들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공증의 수요에 따라 많은 수의 공증인을 운용하여 왔다. 또한 변호사와의 권한의 한계선을 분명히 하여 공증인의 권한의 한계를 확실히 하였다. 나아가 소송실무와의 연계하에 서명뿐 아니라 가능한 문서내용의 진정성까지 선서등의 인증을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소송절차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증제도를 통일모델법에 포함시켜 전자적 방식의 공증행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관계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체계화 시켰다. 현재 미국의 각 주 입법자들은 뉴 멕시코 주의 행정규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모델법상의 전자공증제도와 ‘전미전자공증기준(the National E-Notarization Standards),’ ‘통일부동산 전자기록법(the 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등을 혼합, 조화, 개선함으로써 최신화된 전자공증제도를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내 전자공증제도의 사회적 정착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유진호**

(미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미국 변호사)